

상속세 납세의무

※ 상속세 계산구조

총상속재산가액(본래의 상속재산+의제상속재산+추정상속재산)

- 비과세상속재산(금양임야 등)
- 과세가액공제액(과세가액불산입등)

+ 증여재산가액

= 상속세과세가액

- 인적공제
- 물적공제
- 감정평가수수료공제

= 상속세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 세대할증과세

- 세액공제

+ 가산세

= 납부할세액

1. 상속세 개요

가. 상속세 의의

상속이란 사망한 사람이 생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상의 권리와 의

무가 그의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일신전속권은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상속세는 자연인의 사망에 의하여 재산이 법정상속인 또는 유족이나 지정한 상속인에게 이전되었을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사망자의 유산이 갖고 있는 담세능력 또는 상속에 의해 재산을 무상취득함으로써 생긴 취득자의 담세능력을 세부담의 원칙으로 한다.

상속세는 부의 집중을 억제하여 국민의 경제적 균등을 도모하는데 그 정책목적이 있다.

또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통하여 소득세의 기능을 보완하는 효과도 있다.

나. 거주자의 사망에 의한 재산 이전 방식

(1) 민법상 상속

사망 또는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권리·의무를 일정한 자, 즉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사망에는 자연적 사망뿐만 아니라 인정사망, 실종선고에 의한 사망 등이 포함된다. 상속개시의 시기는 상속개시의 원인이 발생한 때이다.

(2) 유증

유증이란 유언자가 유언에 의하여 재산을 수증자(수유자)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언으로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는 단독행위이다.

유증에는 포괄유증과 특정 유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포괄유증은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정 비율의 유증을 말하고, 특정유증이란 상속재산 중 특정한 재산을 증여하는 유증을 말한다.

(3) 사인증여

사인증여란 증여자가 생전에 무상으로 재산의 수여를 약속하고 증여자의 사망으로 그 약속의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계약의 일종으로 수증자와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는 점에서 단 독행위인 유증과 차이가 있다.

한편,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 및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증여를 사인증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시킨다.

(4)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자 등에게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다.

다. 상속세 과세방식

(1) 유산세 방식

사망자의 재산에 대해 재산분배가 이루어지기 전에 피상속인의 유산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부과하는 조세로 재산제세적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에는 모든 상속재산,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사망자의 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재산 총액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과세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즉, 상속인이 취득하는 상속재산의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피상속인의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한다.

장점으로는 유산총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세무행정이 용이하고 세수증대가 큰 장점이 있다.

단점으로는 상속인의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상속재산에 의하여 상속세가 과세됨에 따라 담세력에 의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아 과세형평에 문제가 있다.

총상속재산에는 유증·사인증여 재산도 포함하며, 비과세 재산도 일단 총상속재산에 포함시킨 뒤 과세가액 계산시 차감한다.

※ 부와 모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 상속세 과세

부와 모가 동시에 사망하였을 경우 상속세 과세는 부와 모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각 개별로 과세하며, 이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유산취득세

각자가 받은 증여재산 가액을 과약한 후 이에 일정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세무행정 부담은 크지만 각자 담세력에 맞게 과세하는 장점이 있다.

2. 상속세 납세의무자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법정상속인, 대습상속인, 결격상속인, 상속포기자, 민법상 특별연고자, 유증 또는 사인증여를 받은 자 등이 될 수 있다.

(1) 상속인

상속으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한 상속인은 당연히 납세의무가 있다.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될 당시에 상속인의 지위에 있었던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상속이 개시된 후에 상속을 포기한 자도 상속인에 해당한다(대법원 1993.9.28.선고 93누8092 판결).

상속인에 해당하는 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등이다. 그 밖에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경우의 상속인 등이 있다.

(가) 단순승인 상속인의 납세의무 범위

단순승인이란 상속인이 채무를 포함한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의 권리, 의무를 제한없이 승계할 것을 승인하는 상속인의 의사표시이다.

그 결과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때에도 변제를 거절하지 못한다. 그리고 피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도 강제집행할 수 있으며, 상속인의 채권자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다.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은 그가 받은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상속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단독상속의 경우 상속세 전부에 대해 납세 의무를 부담하고,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인별로 상속받은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 납세 의무를 부담한다.

※상속세 부담비율= 상속인별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상속세과세표준-가산한 증여재산 등 상속인·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 한편, 미리 재산을 증여받은 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 한도를 정하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사전증여재산을 가산하였다면 그에 상응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은 공제 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8.11.29.선고, 2016두 1110 판결).

(나) 한정승인 상속인의 납세의무 범위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승계는 하지만 채무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변제의 책임을 진다는 유보부 승계를 할 수 있는 제도이다.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면 된다.

그리고 피상속인의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며, 상속재산으로부터만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 한편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는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으로부터 그 채권의 만족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재산을 고유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으로 삼아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형평의 원칙이나 한정승인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며, 이는 한정승인자의 고유채무가 조세채무인 경우에도 그것이 상속재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조세나 가산금, 즉 당해세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6.5.24. 선고 2015다250574 판결).

한편,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상속의 한정승인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상속세 부과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부산고법 2005.5.13. 선고 2003누3369 판결).

(다) 상속포기자의 납세의무 범위

상속포기란 당초 상속인이 아닌 경우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선순위 상속자가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00조에 의한 차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어 부채가 승계된다.

상속포기의 효력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된 상속에만 미치고, 그 후 피상속인을 피대습자로 하여 개시된 대습상속에까지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17.1.12. 선고 2014다39824 판결).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당연히 상속세 납세의무가 없다.

다만, 상속포기한 상속인이라도 상속개시 전 ①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 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거나 ②사용처 불분명으로 추정상속재산, ③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이 있는 때에는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다.

이는 사전 증여를 통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의 누진과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 증여 등을 통해 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 회피되는 상속세와 과세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9.2.12. 선고 2004두10289 판결).

(2) 수유자 또는 사인증여를 받은 자의 납세의무 범위

수유자는 유증 또는 사인증여를 받은 자를 말하며, 유증이란 유언자가 유언에 의하여 재산을 수증자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것을 의미하고, 사인증여란 증여자가 생전에 무상으로 재산의 수여를 약속하고 증여자의 사망으로 그 약속의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계약을 말한다.

민법상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따라서 포괄수증자는 상속인과 동일하게 상속재산에 대하여 포괄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①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유자 중 영리법인이 있는 경우는 증여 또는 분여받은 재산(자산수증이익)에 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이므로, 그러한 영리법인은 별도로 상속세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된다.

다만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상속인과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지분 상당액을 상속인과 직계비속이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수유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비영리법인 등이 상속재산을 유증받은 경우에는 유증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세 납세의무를 진다. 법인격 없는 단체도 비영리법인으로 보므로 마찬가지이다.

다만, 비영리법인 등이 종교, 자선, 학술 등 공익법인에 해당되는 경우 그 공익법인 등이 유증받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대해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한다.

또한 비영리법인 중 수익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법인세가 과세되므로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3) 기타 상속세 납세의무자

민법상 특별연고자, 증여채무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재산을 취득한 자 등이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다.

(4) 상속분

① 지정상속분과 법정상속분

상속분이란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 의무의 비율을 말한다.

지정상속분이란 유언에 의한 유증을 말하고,

법정상속분이란 유언상속분이 없는 경우 민법에서 정한 상속분이다.

② 구체적 상속분

구체적 상속분이란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감안하여 일정한 계산 방식에 의하여 수정된 최종적인 상속분을 말한다.

특별수익자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을 자를 말한다.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 (상속재산의 가액 + 특별수익가액) × 법정 상속율 - 특별수익가액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안 동거·간호 등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

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에 가산하는 상속분을 말한다.

기여자의 상속분 = (상속재산의 가액 - 기여분) × 법정상속율 + 기여분

※공동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

공동상속인의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는 다른 공동상속인 각자의 고유의 상속세 납세의무가 그들 각자에 대한 과세처분에 의하여 확정되면, 상속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확정되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은 별도의 확정절차 없이 바로 그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징수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대법원 2001.11.27. 선고 98두 9530 판결).

3. 상속재산

가. 상속재산(본래의 상속재산)의 의의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말한다.

그러나 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그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는 물권, 채권 및 무체재산권, 주식, 신탁 수익증권, 영업권 등이 있다.

상속재산에는 본래의 상속재산, 그리고 상속재산으로 보는 의제상속재산, 추정상속재산으로 분류할 수 있다.

※상속재산 확인방법으로는 ①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와, ②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가 있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는 정부24,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금융감독원 상속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는 은행 또는 우체국을 방문하여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1)채권

채권의 경우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그리고 피상속인이 재산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아직 이행이 되지 않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면 그 재산은 취득할 권리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한편 법인에 대한 가수금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다.

한편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가액은 상속재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채무

또한 피상속인이 지고 있던 채무, 유증에 의한 채무 등의 소극재산도 포함한다.

(3)종된 권리

질권·저당권 또는 지역권과 같은 종된 권리는 주된 권리의 가치를 담보하고 또는 증가시키는 것으로서 독립하여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4)상속개시 후 처분재산

한편,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을 취득자로 하여 증여 또는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 그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또한 상속인 외의자를 취득자로 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 그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5)증여채무 이행 중 사망한 경우 재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 및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사인증여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시킨다.

나. 의제상속재산

(1) 개념

의제상속재산이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본래의 상속재산, 즉 상속·유증·사인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아니어도 실질적으로는 상속이나 유증 등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경우에 상속재산으로 의제하는 재산이다.

본래 상속재산이 아니더라도 일정한 재산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데 이는 사망으로 인해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그 형식이 상속, 유증 또는 사인증여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함으로써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의 세 종류가 있다.

(2) 종류

(가) 일정한 보험금

①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②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아니더라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손해보험의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간주한다.

※사망보험에 있어 피보험자인 사망자가 수익자를 사망자 자신으로 지정한 경우에 보험수익자가 사망하면 그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된다(대법원 2000.10.6. 선고. 2000다38848 판결).

이 경우 보험계약상 보험금의 수취인이 상속인이어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유한 권리에 의하여 직접취득한 것이므로 본래의 의미의 상속재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실질적으로 상속재산을 취득한 것과 동일하다고 보아 의제상속재산으로 본다.

즉, 생명보험에 관한 보험금 지급청구권은 사망보험금 수익자로 기재된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 지급청구권이 있다. 그러므로 상속인들 고유재산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다 36492 판결).

한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받는 생명보험의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의제한 것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거나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9.11.26. 선고 2007헌바 137 결정).

(나) 일정한 피상속인의 신탁재산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으로 피상속인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한 경우 그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한편 피상속인이 타인 명의로 해둔 명의신탁 재산은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부과와 관계없이 피상속인이 은닉한 재산이므로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다)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등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퇴직수당·공로금·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의제한다.

다만,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반환일시금,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재해보상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일정한 유족연금, 「군인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일정한 유족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일정한 유족연금,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그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 「전직대통령

령예우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지급되는 일정한 유족연금 등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다. 추정상속재산

(1) 의의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 또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이 일정액 이상인 경우에는 처분 또는 인출 가액이나 채무부담액에 대하여 그 사용처를 입증하도록 하고 그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일정한 금액을 상속인이 현금으로 상속받을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상속세는 다른 세목에 비해 세원 포착이 어렵고, 조세면탈이 극심하여 과세자료의 포착이 쉽지 않은 현금 등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함으로써 상속세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즉,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여 현금으로 직접 증여하는 등 변칙적인 방법으로 상속세를 회피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2) 추정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

① 상속개시 전 자산의 처분 또는 예금 등의 인출

－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현금, 예금 및 유가증권,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재산)로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 또는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2억 원 이상인 경우

－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현금, 예금 및 유가증권,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재산)로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 또는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다만, 상속인이 구체적인 용도를 입증하면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② 상속개시 전 채무부담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인 경우 또는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액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인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그 밖의 자로부터 차입한 채무의 경우에는 채무부담계약서 등에 의하여 사용처를 규명한 결과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③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는 경우

㉠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 인출한 금전, 채무부담액 등이 거래상대방의 증빙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 인출한 금액, 채무부담액 등이 거래상대방과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거래상대방이 부인하는 경우

㉢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인으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 피상속인의 연령, 직업, 경력,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④ 상속추정의 배제

재산처분 또는 인출금액의 80% 이상이 소명되고 미해명액도 2억원에 미달하면 상속추정이 배제된다.

라. 명의신탁 재산

피상속인이 명의신탁을 하여 둔 재산에 대하여 그 수탁자에게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이 신탁자인 피상속인의 소유에 속한 것이라는 실질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그 재산은 피상속인의 사망 시 당연히 상속재산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7.28. 선고 2002누16865 판결).

다만, 상속재산가액에 산입될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그 실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1997.11.14. 선고 97누669 판결).

마. 비과세 상속재산

-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일정한 공공단체에 유증(사인증여)한 재산
-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도 지정문화재와 같은 법에 따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일정한 토지
- ㉢ 일정한 규모의 묘토인 농지, 금양임야, 족보와 제구
- ㉣ 정당에 유증하는 재산, 정치자금
- ㉤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근로복지기금, 우리사주조합, 근로복지진흥기금에 유증한 재산
-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한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등 유증한 재산
- ㉦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 단체에 증여한 재산
- ㉧ 전사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망 또는 전쟁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인 경우의

상속재산

바. 총 상속재산가액의 계산

(1) 상속재산 종류별 평가 원칙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원칙으로 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여 재산을 평가한다.

(2) 시가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한다.

또한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한다.

그리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고,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도 시가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2.6.14. 선고 2010두28328 판결).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한다.

4. 상속세 과세가액

(1) 개념

상속세 과세가액이란 상속세가 과세될 과세물건의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상속으로 취득한 총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증여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고, 여기에 비과세재산가액(국가에 대한 유증 등), 과세가액불산입액

(공익목적 출연재산가액 등), 과세가액공제액(공과금, 피상속인의 장례비용, 채무)를 공제하여 계산한다.

한편,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다.

(2) 총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증여재산 가액

(가) 합산취지

생전 증여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켜 조세부담에 있어서의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형평을 유지하고, 피상속인이 사망을 예상할 수 있는 단계에서 장차 상속세의 과세대상이 될 재산을 상속개시 전에 상속과 다름없는 형태로 분할, 이전하여 누진세율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부당한 상속세 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헌재2006.7.27. 선고 2005헌가4 결정).

(나) 총 재산가액에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의 재산을 여러 사람에게 증여하여 상속세 누진 과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킨다.

㉠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한편,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도 해당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한다.

한편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신된 때에 대습상속의 요건을 갖추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인이 되었다면 그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 부터 증여 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인에 대한 증여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8.12.13. 선고, 2016두 54275 판결).

(다) 합산방법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이 아닌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다.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다.

부담부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경우에는 채무를 공제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한다.

(라) 총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지 않는 증여재산가액

- ㉠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 ㉡ 면제되는 증여재산
- ㉢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의 증여
-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 ㉦ 특수관계법인과 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 ㉧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 ㉨ 재산 취득 후 개발사업 시행 등으로 재산가치가 증가함에 따른 이익의 증여

(3) 총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과세가액 공제액)

(가) 일정한 공과금

국세,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지방세, 공공요금, 공과금 등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이나,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 상속인에게 승계된 것을 말한다. 다만,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의 귀책사유로 납부 또는 납부할 가산세, 가산금은 제외한다.

※한편, 피상속인이 고용한 사용인에 대한 상속개시일까지의 퇴직금 상당액은 피상속인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한다.

(나) 일정한 범위의 장례비용

장례비용에는 시신의 발굴 및 안치에 직접 소요되는 묘지구입비, 비석, 상석 등 장례에 직접 소요된 제반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일정한 한도가 있다.

(다) 피상속인의 채무

①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말한다(대법원 2008.11.27. 선고 2008두 13659 판결).

채무는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으로 그 채무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채무라는 사실만 입증되면 공제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보증채무, 연대채무, 증여채무, 임대보증금 채무, 미지급이자 등도 채무에 해당된다.

따라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제3자를 위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거나 물상 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에,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어 피상속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될 뿐만 아니라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채무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대법원 2003. 6.13. 선고 2002두1618 판결).

다만, 보증채무, 연대채무는 주채무자 또는 다른 연대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가 되어 주채무자 또는 연대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공제가 가능하다.

소비대차에 따른 채무(가압류채무 포함)는 원금과 상속개시일 현재 미지급이자를 포함하여 채무로서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 밖의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따라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증명되는 채무를 말한다.

한편, 법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가지급금은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당해 가지급금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받을 수 있다.

그리고 피상속인이 재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아직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이미 받은 계약금이나 중도금은 채무액으로 공제하거나 그 재산가액의 평가시 차감한다.

※타인명의 대출금 지급 채무

피상속인이 금융기간으로부터 타인명의로 대출받았으나 사실상의 채무자가 피상속인임이 확인되는 경우의 해당 대출금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다(재산46014-2341, 1997.10.1.)

※퇴직금 상당액

피상속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인에 대한 상속개시일까지의 퇴직금상당액(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채무로 인정된다(재산세과-370, 2012.10.9.)

※가지급금

피상속인의 가지급금 변제 의무를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경우 가지급금은 상속채무에 해당한다(법규과-2647, 2006.6.28.)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미지급 이자

상속개시일 현재 소비대차에 따른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미지급이자자는 공제대상 채무에 해당한다(상증법 통칙)

②과세가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채무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 그 부담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채무

가령 보증채무 등은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수 없다).

다만,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4) 총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재산(과세가액 불산입)

(가)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 자선, 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출연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된다. 그리고 출연받은 재산은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경우

다만, 공익법인이 그 재산을 공익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제받았던 상속세가 다시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한 출연재산 및 그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① 공익법인의 개념

공익법인 등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열거된 공익법인으로 종교, 자선, 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교회 등 종교단체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법인으로 등록했는지에 관계없이 당해 종교단체가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에 따라 판단한다.

② 공익법인의 출연시기

출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신고기한인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내에 하여야 한다.

출연이란 출연계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이행까지 이루어진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1.6.29. 선고 2000두4156 판결).

공익법인의 출연시기는 출연재산을 취득한 때로

- 부동산 등의 경우에는 등기, 등록에 의하여 그 소유권이 공익법인 등의 명의로 이전된 때를 말하고,
- 동산의 경우에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 대상 물건을 인도받은 때를 말한다.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출연시한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될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출연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란 공익법인 등에 재산을 출연하고자 하였으나 자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장애사유 등이 있어 그 출연이 지연되는 사유를 의미한다(대법원 2014.10.15. 선고 2012두22706 판결).

③ 출연주식 등 한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할 경우에 일반 공익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일반법인은 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공익법인은 10%, 자산, 장학 또는 사회복지 사업을 목적으로 한 성실공익법인은 2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이는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출연 방법으로 공인법인은 내국법인에 대한 지배수단으로 이용하면서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7. 4.20. 선고 2011두 21447 판결).

(나) 공익신탁재산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재산으로서 종교, 자선, 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에 출연하는 재산으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재산의 가액은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5. 상속공제

가. 기초공제

상속이 개시되는 때 무조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 원을 공제한다.

나. 배우자 공제

(1) 취지

배우자 상속공제 취지는 배우자간의 상속은 세대 간의 이전이 아니고 수평적 이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상속재산 중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 부분에 대하여는 과세를 유보한 후 배우자의 사망시 과세하도록 하는데 있다.

(2)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

배우자 공제 5억원을 공제한다.

(3)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일정한 한도 내에서만 공제가 된다. 한도액 계산은 일정한 상속재산의 가액에 배우자 법정상

속비용을 곱하여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계산한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계산은 배우자가 상속받은 상속재산가액에서 배우자가 승계하기로 한 공과금 및 채무액, 배우자 상속재산 중 비과세 재산가액, 배우자 상속재산 중 과세가액 불산입액을 각각 제외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즉, 적극적 상속재산가액에서 소극적 상속재산가액을 차감한 실제 상속받은 순재산가액을 말한다.

그리고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에서 사전증여에 의한 증여세 과세표준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공제 대상 배우자 상속공제액이다. 그리고 이 금액은 30억 원을 한도로 한다.

즉 일정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과 30억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4) 공제요건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기한의 다음날로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이 아닌 협의분할로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그 사실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소재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상속재산 분할까지 배우자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재산분할 기한의 다음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분할 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다. 그 밖의 인적공제와 일괄공제

그 밖의 인적공제로 자녀공제, 연로자 공제, 미성년자 공제, 장애인 공제가 있다. 한편,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일괄공제 제도가 있다.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기한 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원만 공제한다. 일괄 공제란 기초공제에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이 5억원 미만일 경우, 5

억원을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배우자 1명만 있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배제하고 기초공제 및 그 밖의 인적공제의 합계액으로만 공제한다. 한편, 기한후 신고의 경우에도 기한내 신고와 동일하게 상속공제를 할 수 있다.

라. 가업상속공제

(1) 의의

일정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경영한 피상속인인 경우 가업상속재산가액의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것이 가업상속공제이다.

(2) 취지

가업승계에 관하여 상속세 등 과세특례를 규정한 취지는 중소기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경제 활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가업의 상속과 증여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하고자 함에 있다(대법원 2014.3.13. 선고 2013두17206 판결).

※가업승계

가업승계란 중소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이나 증여를 통하여 기업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친족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3) 공제요건

(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법인의 형태로 기업을 경영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일정한 업종(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조세특례제한법과 중소기업법상 매출액, 독립적 기준을 충족하면서 자산총액이 5천 억 원 미만인 기업이 이에 해당한다.

중견기업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일정한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조세특례제한 법과 중소기업법상 독립적 기준을 충족하면서 상속개시일 직전 3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4천 억 원 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나) 피상속인의 가업요건

1) 법인기업의 최대주주(주식 등 지분요건)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이고, 법인 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법인 주식 총수 등의 40% 이상(상장법인은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여야 한다.

※이 때 최대주주 중 1명의 피상속인에 대해서만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다.

2)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가업요건)

경영이란 단순히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넘어 기업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실제 가업운영에 참여한 경우를 의미한다(재산세제과-825, 2011.9.30.).

① 피상속인이 50%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기업의 가업을 영위하여야 하거나(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여야 한다)

②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업종을 경영하여야 한다.

③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을 대표 이사로 재직하면서 가업을 영위하여야 한다.

④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 10년 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가업을 영위한 경우 중 하나에 해당되면 가업요건은 충족된다.

한편,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체를 동일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취득한 주식의 보유 기간은 개인사업체에서 대표자로서 사업을 운영한 기간을 포함한다.(서면-2017-법령 해석재산-0561, 2017.6.30.). 즉 개인사업자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법인으로 전환하여 법인과 개인의 형태만 변경되었을 뿐 전환후 실체가 동일한 경우 가업법인의 영위기간 판단시 개인사업체의 운영기간을 포함한다.(기획재정부 재산세세과-725, 2019.10.28.).

(다) 상속인 요건

- ①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 ②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하여야 하다.
- ③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이내에 대표이사 등에 취임하여야 한다.(법인등기부에 등재되고 대표이사직을 수행)

(라) 가업상속재산의 범위

①가업상속재산 개념

가업상속재산이란 개인기업은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을 의미 하며, 법인기업은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 주식(10년 미만 보유주식도 가업상속공제 가능) 등의 가액을 말한다.

② 개인기업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재산 중 기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고정자산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말한다. 가업상속재산가액 계산 시 해당 재산에 담보된 채무가액은 차감한다.

*개인기업의 가업상속공제액= 사업용 자산가액-사업용 부채가액(사업용자산에 담보된 채무)

③ 법인기업을 상속받은 경우

해당 주식 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상속개시일 현

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업상속재산가액으로 한다.

*법인기업의 가업상속공제액 = 피상속인 주식가액 × (1 - 업무 무관자산 비율)

(마) 기업을 공동상속받은 경우

1개의 기업을 공동상속한 경우 대표자로 취임하는 등 가업승계요건을 충족한 자의 승계지분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다(사전답변, 법령해석재산 0238, 2016.7.29.).

또한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인들이 1개의 기업을 공동상속받고 공동(각자)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 또는 가업재산을 상속받기 전에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적용된다(질의회신, 법령해석재산-1278, 2018.10.15.).

(바) 가업상속공제액

위의 모든 가업상속 공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일정한 한도 범위 내에서 가업상속재산 가액의 100%를 공제한다.

(사)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5년 사후관리)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상속공제 후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을 처분하거나,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정규직 근로자의 평균이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정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일정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과세한다.

※가업상속공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시 제출 서류

①가업상속공제신고서

②가업상속재산가액 명세서

- ③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 ④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했음을 입증하는 서류

마. 동거주택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무주택자 또는 1세대 1주택 보유자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한 것으로

동거주택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해 ①1세대를 구성한 1세대 1주택에서 ②10년 이상 계속 피상속인과 동거한 ③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 당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제도를 말한다.

한편, 동거주택상속공제액이 한도는 6억원이다.

※ 동거주택상속공제액 계산: (상속주택가액-해당주택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100%

바. 영농상속공제(5년 사후관리)

피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해 오던 중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계속 영농에 종사하도록 함으로써 농민 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한 가액의 영농상속공제를 하여 준다.

(1)피상속인 경작요건

피상속인이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에서 상속개시일로부터 8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개인영농 또는 법인영농)하여야 한다. 이 때 개인영농의 경우 피상속인의 질병 요양 해당기간은 직접 영농한 것으로 간주한다.

(2)상속인 요건

- ①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영농상속재산 전부를 상속받아야 한

다.

②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고,

③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개인영농 또는 법인 영농)에 종사하여야 한다.

사. 기타상속공제

기타 금융재산 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감정평가수수료 공제가 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재산 종류 간 과세형평을 위하여 일정한 순금융재산을 공제하여 준다.

재해손실공제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화재, 붕괴,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상속 재산이 멸실되거나 훼손되는 경우에는 그 손실가액을 상속세의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단기재산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상속개시후 10년 이내에 상속인 등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의 상속세 상당액 중 일정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공제율: 재상속기간1년 이내 100%에서 10년 이내 10%
(1년마다 10%씩 공제율 감소)

6. 상속세 물납

가. 물납의 의의

물납이란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조세채무를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조세는 원칙적으로 금전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데, 납세의무자가 현금을 보유하

고 있지 않거나 금전으로 납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부동산, 유가증권 등의 특정재산으로 납부할 수 있는데 이 제도가 물납이다.

나. 물납요건

- ①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여야 하고,
- ② 상속받은 부동산과 유가증권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50%를 초과하여야 한다.
- ③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일정한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하여야 한다.(현금 예금 등 금융재산이 상속세 납부세액 보다 작아야 한다)

다만, 물납 가능 납부세액에는 일정한 한도가 있다.

다. 물납신청 기한 및 승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기한까지 하여야 한다.

그리고 관할 세무서장 등은 신청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9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라.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1)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물납이 가능하다.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 배제

- ① 그 재산에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 ② 물납 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 ③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 ④건축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토지,
- ⑤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 등 관리,
- ⑥기타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은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유가증권과 주식 등

- ㉠ 국채·공채, 수익증권, 집합투자 증권 등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상장주식 등
- ㉢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국채·공채, 수익증권, 집합투자 증권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상장주식 등이 없는 경우에는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비상장 주식 등
- ㉣ 정리하면 주식 또는 비상장 주식은 원칙적으로 물납을 허용하지 않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물납에 충당할 수 있다.

※ 유가증권은 주식 발행법인이 폐업, 해산사유 발생, 회생절차 중인 경우, 최근 2년 이내 법인세법상 결손 발생, 최근 2년 이내 외부감사대상 법인으로 감사의견 미표명, 상장폐지 주식은 물납을 허용하지 않는다.

마. 물납재산의 수납

(1)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 순서

- ①국채 및 공채
- ②물납 충당 가능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 ③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제외한 국내 소재 부동산
- ④물납충당이 가능한 비상장주식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비상장주식의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하면 물납에 충당할 수 있다.

(2)물납재산의 수납 방법

① 부동산인 경우

등기촉탁승낙서를 첨부하여 국세물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서에 의하여 소유권을 국으로 이전

②유가증권인 경우

등록이 필요한 경우 명의를 국으로 개서하고, 반드시 점유하여야 한다.

(3)물납재산의 수납가액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의 가액이다. 여기서 상속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상속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바. 증여세 물납 자산이 유상양도에 해당 여부

증여세의 물납은 증여세를 금전으로 납부하는 것에 갈음하여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으로 납부하는 것으로서 그에 따라 납세의무자는 증여세 채무를 면하게 되므로 이는 공법상 대물변제적 성격을 가진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주권의 물납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된다(대법원 2009.9.10. 선고 2007두14695 판결).

또한 물납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판단에 따라 수익을 실현하는 일반적인 부동산의 처분이나 대물변제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는 점, 납세의무자로서는 조세납부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여 양도대금 중 일부로서 증여세를 납부하기로 하는 경우에도 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므로 물납을 자산의 양도로 보아 소득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고 하여 그것이 물납제도의 취지

에 반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증여세의 물납은 자산의 유상적 양도로 보아야 한다(서울고법 2016.8.30. 선고 2016누 39919 판결).

한편, 증여세를 주식으로 물납한 후 과세관청이 환급결정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하는 것으로, 물납한 주식 중 일부가 매각되었다 하더라도 잔여 물납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여 물납주식으로 환급한다(과세기준자문, 법령해석기본-426, 2019.6.11.).

사. 물납재산의 환급

상속세 등을 물납한 후 그 부과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하여야 한다.

7. 연부연납

상속재산이 부동산 등에 집중되어 있어 현금화가 어려운 경우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하여 연부연납제도를 두고 있다. 즉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신청기한 내에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한편, 연부연납 신청시 신청한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연부연납기간은 최장 10년이다.

※문화재 등의 징수유예

상속재산 중 문화재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상속세액의 징수를 유예한다.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상속세 납세의무자 중 일부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상속세납세의무자들이 미납부된 상속세에 대하여 자기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를 하여 연대 납부할 책임이 있다.

※ 유언대용신탁

1. 신탁이란

위탁자(신탁을 설정하는 자)와 수탁자(신탁을 인수하는 자)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일정한 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2. 유언대용신탁의 의의

위탁자가 생전에 금융기관과 신탁관계를 통해 자신의 사망 이후에 수익자에게 수익권을 귀속시키거나 신탁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수익권을 부여하는 형태의 신탁을 말함. 즉, 피상속인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금융기관이 피상속인이 신탁한 예금과 채권, 부동산 등 자산관리를 맡고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그 금융기관이 신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재산을 상속집행한다.

3. 세금문제

위탁자 사망시 상속세가 부과된다.

한편, 하급심 판례에서는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독립된 재산으로 보고 신탁재산의 실질적 처분권이 수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므로 유언대용신탁을 수탁자에 대한 증여로 볼 수 없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4. 장점

복잡하고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따지는 유언에 비해 신탁계약을 통해 유언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상속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